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3
----------	-----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되었던 제증명 수수료 감면 혜택을 5·18민주유공자 등 4개 부분에 대하여 확대하고, 건물번호판 부여(변경) 신청 등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제7조 제1항 제1호 바목 내지 자목 규정)

-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장애인, 의사상자

나. 수수료 신설(제3조 제1항 [별표 1] 규정)

○ 종합민원과 소관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 건당 7,000원

○ 환경과 소관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 건당 6,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별첨 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2)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2012-254호(2012.3.16~2012.4.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감사실-12093호 2012.4.9)

(4)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11963호(2012.4.4)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4]

(6)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

경제정책과-5114(2012.7.4)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증명과 인허가,기타 신고,신청,수리,등록,지정”을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의”로, “입찰참가신청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를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 등”을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로, “조례에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가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인”을 “여러사람”으로, “1인마다 1건으로하여”를 “1명당 1건으로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할 때 1명이 1건에 2대 이상”으로, “1대마다 1통으로 보아”를 “1대당 1건으로”로,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위와 같이 1건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으로, “때에는 1건마다”를 “경우에는 1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는 평창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증명”을 각각 “각종 증명”으로,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을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면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면발급기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취소 하여”를 “취소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취소하는 경우는”을 “취소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등)”을 “(수수료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에 한하며”를 “사람에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의하여 결정·등록”을 “따라 등록”으로, “유·가족”을 “유족·가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하여 결정·등록”을 “따라 등록”으로, “유·가족”을 “유족·가족”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자후유증 2세환자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가족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가족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제7조제2항 중 “중·소대장과 읍·면·리대장 및 리·반장”을 “중대장

·소대장과 읍대장·면대장·리대장 및 이장·반장”으로, “하는 때에는

그”를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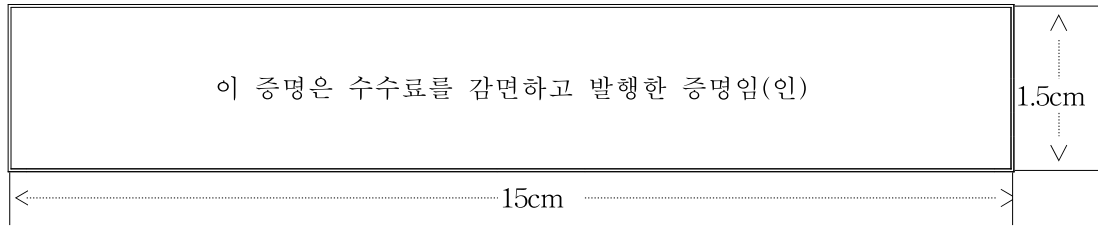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종합민원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7,000원	신 설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관광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1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영화상영권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권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30,000원	
4. 경제체육과 소관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1,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5. 환경과 소관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1건	6,000원	신 설
6. 건설방재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7. 도시주택과 소관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8.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인정	1건	30,000원	
○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30,000원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30,000원	
9. 농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0원	
○ 어업신고	1건	1,000원	
○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 어업폐지 신고	1건	1,000원	
○ 내수면 어업면허(복합)	1건	20,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	1건	10,000원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0원	
10. 기술지원과 소관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5,000원	

[별표 2]

수수료 감면 고무인 (제7조제3항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 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서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입찰참가신청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p> <p>②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p>	<p>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 --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 · 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의 ----- 검 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 ----- -----.</p> <p>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가· 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 리, 등록·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 이라 한다)의 ----- ----- ----- 조례에 따라 -- -----.</p> <p>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각종 증 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 다.</p> <p>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p>

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가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한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사람-----

----- 1명당 1건으로 하여
-----.

③ -----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할 때 1명이 1건에 2대 이상-----
--- 1대당 1건으로 -----

-- 위와 같이 1건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
경우에는 1건당 -----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평
창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
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
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
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
원증면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
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
거나 취소 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
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
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
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
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
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
창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

---- 각종 증명 -----
----- 곤란
할 때에는 각종 증명 -----
-----.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증면발급기로 발급한 각종
증명 등-----
-----.

제6조(수수료의 반환) -----

---- 취소하여-----
-----.

----- 취소
할 때에는 -----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

하지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창군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

----- 사람에 한정하며 -----

가. -----
----- 따른 -----

나. -----
----- 따라 등록
----- 유족·가족

다. -----
----- 따라 등록
----- 유족·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
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읍
·면·리대장 및 리·반장이 관
내에서 공부(공부 부분)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

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
자, 고엽자후유증 2세환자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사.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입
무수행자와 그 유족·가족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가
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행정상 필요하여 신고·신
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② ----- 중대장·소대장
과 읍대장·면대장·리대장 및
이장·반장-----
----- 할 때에는 ---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별첨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상진
연락처	(033) 330-227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으로서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 ◆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사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교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등

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